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권재열 · 표호건 · 이영우

I. 서론

21세기의 산업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지식정보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부(national wealth)의 정도는 그 국가가 지식집약적 산업에 얼마나 많이 진력하고 있는가에 달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빌 게이츠(Bill Gates)의 머리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실시료는 매주 4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700억원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오늘날 세계적 강국이자 지식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발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발명자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명활동도 기업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발명은 어느 특정한 계층만이 독점하는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학, 그리고 개인에 의한 발명활동은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이에 이들 발명가의 사기양양을 통한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발명의 중요성 강조하며, 창의력을 통한 발명의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발명활동의 장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장차 있게 될 선진제국과의 지적재산권전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의 발명활동 및 대학·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비해 취약한 여성발명가, 교수발명가 및 개인발명가 등에 대한 발명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발명활성화정책의 확충방안

1.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정착

발명영화, 발명관련 프로그램(가제 “비법-천기누설”)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발명이벤트 개최와 10만 발명꿈나무의 양성을 통하여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전문연수, 연구기관으로서의 국제특허연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와 국제통상 마찰 등 국내외 상황 변화에 능동적 대처 위한 전문 인력양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WIPO로부터 아,태지역 지적재산권 연

구, 교육기관으로 지정추진, 새로운 연수 Program 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야의 사학연계 교량 역할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산권 권리설정의 신속화

① 특·실의 2년 처리를 목표로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② 심사인력의 확충

심사처리기관 단축을 위한 심사인력의 확충과 기구의 보완, 분야별 심사처리기간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수인력의 확보

최근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구비한 전문인력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첨단분야 심사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훈련 실시

⑤ 특허행정의 전산화 추진

심사, 심판 등 사무처리의 전산화, Paperless 행정체제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산업재산권 정보 유통체계 개선

① 지적재산권 종합전산망 계획의 효과적 추진 ('89~ '93)

정보자료국의 신설('91.2) 및 인원보강, 세계 특허기술정보의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ON-LINE을 통한 대업체 특허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기술자료 서비스 확대

공보류의 산업별 발간으로 특허정보 이용 촉진, 국내의 특허기술 동향 조사연구, 자료집 발간 배포, 출원상표의 조회검색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발명인구 저변확대 위한 교육강화

①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산업재산권 내용 편수 추진, 전문대학, 대학(원)의 산업재산권 학과, 강좌개설 추진, 발명장려 TV 프로그램 제작 방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체계적인 교육 가능토록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현황(국내, 외) 분석, 커리큘럼 개발, 교원확보, 배출학생의 진로문제 등 연구, 문교부, 대학 등 관계기관에 연구보고서 제시, 교과과정에의 반영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산업재산권 교육연구회 기능 활성화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의 자문기능 강화, 연구결과 세미나 정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우수발명품의 활용지원 강화

①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확충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의 별도 한도 설정 적극 추진하고(창업자금조성, 기수개발자금 및 산업은행자금 등에 반영 관철 노력), 특허기술사업화 제품에 대한 무료 품질평가기관 확대하고, 현재 시험중인 국립공업시험원에서의 평가불능 제품에 대해서는 화학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KAIST 등 전문연구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고, 농공단지, 지방 주요공단 등에의 입주 원활화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우수발명품의 유통강화

발명품 상설전시장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 특허기술 기업화 정보센터 설치 운영하고, 필요인력 및 예산확보, 발명품의 유통 및 기업화 상담, 우수발명품의 지방이동전시 및 유통전시장을 운영,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6. 학생발명전시회 확대개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작품의 지방순회전시를 추진하고, 세계학생발명전시회를 개최 준비하고, 세계청년발명가 박람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7.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발명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립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물이 특허로 출원되어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차원의 발명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현재 기업체, 대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로얄티 수입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 및 개인발명가의 발명활성화를 위해 출원료 감면혜택을 30%에서 50%까지 확대시켜 왔다.

8. 지식재산권보호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는 발명인의 사기양양과 기업체의 재산보호 및 대외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의 신속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형사벌칙을 강화하고, 위조상표단속을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 국선변리사제도 도입검토

출원비용이 과다한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 주는 출원에 있어서 국선변리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 산재권출원구조사업확충

발명의욕 고취 및 우수발명의 적극적 권리화, 활용 유도를 목적으로 학생 및 영세발명자에 대하여 무료변리지원(출원서류 작성, 기타 출원절차 무료대리), 관납요금면제[출원료 및 출원공고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특허, 실용신안 의장)]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

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외국출원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출원구조사업을一元화하는 것도 그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11. 발명진흥기금설치검토

(1) 기금현황

1)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총 61개 설치

공공기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43개, 기타기금으로 기술신평보증기금 등 18개가 설치되어 있다.

1994년부터 기금관리법에 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금설치가 가능하다.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한 법률(남북협력기금법 등 61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2001년 현재 조성현황으로서 순누계조성액은 267조원, 총누계 조성액은 572조원, 운용현황으로는 총 147조원이 운용되고 있다.

(2)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출연은 정부출연, 민간출연이 있고, 부담금은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이고, 차입금

은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국은행, 예금은행, 비통화 금융기관, 기타 민간(국공채)이고, 운용수입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발행등),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유가증권매각수입이 있다.

2) 기금운용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로 구성되고, 지출은 사업비(경상지출, 자본지출, 용자지출),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 상환, 여유자금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법에 의거 매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 최근 기금관련 동향

1) 기금 통합합 추진 및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강화

예산사업 또는 타기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성과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영하고 있고, 부담금 정비, 신규복권발행을 통한 기금조성을 억제하고 있다.

2)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2000년 하반기부터 민주당 기금제도개선 기획단 주관으로 유사중복기금 통합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동내용을 포함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계류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기금관리 주체 및 조성재원과 관계없이 모든 기금은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

문화하여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분류 폐지를 도모하고 있다.

- ②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현행 소관 상임위에만 보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예결위에도 보고토록 의무화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유사기금 난립 및 중복설치기금 등의 통합추진을 위해 법률구조기금, 산업기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등을 폐지하여 기금폐지 및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4) 발명진흥법상 기금관련 규정

1) 발명진흥법 제35조(기금의 조성 등)

발명진흥법 제35조에는 진흥회는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기금조성재원은 진흥회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사용자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기타 운영 수익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발명진흥기금 조성추진

1) 발명진흥기금 조성 추진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발명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추진반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발명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지식혁명시대 도래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및 발명진흥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60-80년대 초반에는 수출중심이었고, 80년대에는 산업정책, 90년대에는 기술정책이 중심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발명·지재권정책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III. 결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명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발명을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발명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연구소를 제외한 여성, 대학, 그리고 개인은 이러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에 대한 노력도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명활동에서 소외된 여성, 대학, 개인의 발명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명의 지적재산권화 내지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학이나 국가차원의 법제도적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대학교수의 발명과 관련하여 대학과 교수 사이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그 특허권의 귀속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 볼 때 교수의 발명은 원칙적

으로 자유발명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학술연구의 특성, 특허관리 및 이용 등을 고려하여 직무발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셋째, 발명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교수의 직무발명에 관해서는 그 보상규정을 세분화하여 보상을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기피하게 되어 그 발명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당국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정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허출원,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특허출원 및 변리비용 등 소요경비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시책은 한시적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교수의 직무발명이 민간부문으로 활발하게 이전되는 때에는 재원을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수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특허권을 평가대상의 범위내에 포함시키고 발명에 대한 평가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등록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등록이 아닌 특허출원의 상태에 대해서도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대학에서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에 있어서 특허실적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교육부도 대학제정을 지원을 위한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소수의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전에 관한 하부구조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므로 기술이전센터가 적극적·능동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발명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를 특허출원전 지원방안과 특허출원 후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즉, 특허출원전 발명진흥책으로 발명의 날 기념행사의 지속적 실시, 학생발명분위기 조성, 기업체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학생 및 영세발명자의 보호육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출원후에 하는 발명의 진흥책으로는 우수발명품의 시작품의 제작지원, 발명장려사업 확충, 외국출원비용의 보조,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국제발명품 전시회의 출품지원, 특허기술이전지원, 특허창업보육센터 설립, 특허기술평가지원, PM제작·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재공·지식재산권연구센터)

발특2002/7

